

제433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23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5)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3)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7)
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5)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4)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5)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9)
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8)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3)
1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2)
1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1)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9)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0)
1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4)
15.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3)
1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5)
1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2)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7)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3)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7)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3)
2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3)
2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14)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8)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6)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1)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7)
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1)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7)
30.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9)
31.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9)
3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8)
3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54)
3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2)
3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4)
3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0)
3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5)
3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8)
39.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7)
4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5)
4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5)

상정된 안건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5) 4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3) 4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7)
..... 4
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5) 4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4) 4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5) 4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9) 4
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8) 4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3) 4
1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2) 4
1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1) 4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9)	4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0)	4
1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4)	4
15.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3) ...	4
1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5)	4
1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2)	4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7)	4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3)	4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7)	4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3)	4
2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83)	4
2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14)	4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8)	4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6)	4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1)	4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7)	4
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1)	4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7)	5
30.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9)	5
31.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9)	5
3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8)	5
3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54)	5
3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2)	5
3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4)	5
3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0)	5
3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5)	5
3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8)	5
39.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7)	5
4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5)	5
4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5)	

(14시03분 개의)

○소위원장 고민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5)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3)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7)
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5)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4)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5)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9)
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8)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3)
1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2)
1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1)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9)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0)
1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4)
15.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3)
1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5)
1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2)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7)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3)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7)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3)
2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3)
2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4)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8)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6)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1)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7)
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1)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7)
30.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9)
31.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9)
3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8)
3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54)
3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2)
3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4)
3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0)
3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5)
3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8)
39.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7)
4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5)
4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5)

○소위원장 고민정 의사일정 제1항부터 41항까지 4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두 개정안은 학교의 폐쇄명령, 미인가 시설의 폐쇄명령 위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인데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2페이지, 3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대부분 논의를 마쳤는데 미인가 시설에 대한 명확한 폐쇄명령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의 보고를 들으시고 논의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안교육기관 법에는 등록 제외 요건 중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학교 폐쇄명령을 받은 미인가 시설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부과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할 것이고,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혹시라도 등록을 원하는 기관들이 제대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지난번에 논의를 많이 했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지금 개정안

은 폐쇄명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아닙니다. 폐쇄명령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데 대한 논의라 굉장히 명쾌한 논의기 때문에, 지금 또 교육부에서 말씀하셨고 법안들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좀 간결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차관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말씀대로 지난주 법안소위 이후에 저희 의원실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정리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법을 위반한 학교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가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인데 학교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요. 저도 동의하고요. 두 번째, 인가받지 않고 운영되는 학교 형태의 교육시설에, 제가 저희 보좌진을 통해서 받은 보고는 교육부에서 특히 관심 있는 것은 굳이 대안학교라기보다는 미인가 국제학교 같은 것들을 좀 규제하려고 하는 의지다라는 게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이 대상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해당 입법의 주 타깃이 대안교육기관이 아닌 미인가 국제학교 등이라는 게 사실이 아닙니까?

국장님.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학교정책관 김영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미인가 국제학교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조사·점검하고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법적 테두리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이것만 좀 확인하고 싶은데, 미인가 교육시설이라고 그러면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대안교육기관법이 있지만 대안교육에 두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만들어서 등록하고 인가받지 않은, 그러니까 등록 대안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인가 대안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안학교의 경우는 등록만 해도 미인가 교육시설이 아닙니까?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이번 주에도 부감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전달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대상에, 지금 1항은 학교고 2항은 인가받지 않고 운영되는 학교 형태의 교육시설이라는 것에 좀 더 구체적인 문구를 집어넣어서 ‘이 교육시설에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에 해당하는 등록된 대안학교는 제외한다’라고 적시하시면 어떠세요, 그게 법의 의도도 아니신데?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하는데요. 이 부분 아까 정성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학교 폐쇄명령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위한 이행강제금을 부

과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학교 폐쇄명령의 조건을 좀 더 구체화하는 부분들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업무들을 쪽 처리해 나갈 거고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에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폐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폐쇄 절차를 만든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등록되지 않는 교육기관으로 앞에서 미인가 국제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루트를 꼭 없애는 게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중요한가, 좋은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있다가 해외로 파견된다 이럴 때 정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국제학교에 보내서, 그것이 인가이든 아니든 해외로 나갈 때 아이를 준비시켜서 나가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개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공무원들께서도 해외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을 어떻게 준비해서 나가는 것이 좋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면 꼭 이런 루트를 완전히 폐쇄하는 게 좋은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는 들고.

두 번째는 이것을 폐쇄명령에 안 따르면 벌금으로 하는 것인데 그게 결국 학원비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미인가 학교의 교육비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고민정 교육부 말씀하세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해외에 나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교에 있다가 갈 수가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명확합니다. 학교 인가제를 두는 이유 자체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또 학교의 갑작스러운 폐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고요.

그리고 이 법안은 학교 폐쇄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매기자는 것이고요. 벌금은 아닌 거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사교육비가 더 늘어난다든지 하는 쪽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이 법안에 대해서 너무 깊고 광의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아까 정성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 폐쇄명령을 내렸는데 폐쇄를 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제도화하는 거니까 딱 이 선에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아마 뉴스들 찾아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실제로 학교인 줄 알고 미인가 국제학교에 모집 등록을 했다가 그게 엮어져 버리면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어서 시위를 하시고 기자회견을 하시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기사에서도 계속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법적인 미인가 국제학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도와 정책으로 정확하게

규제할 것은 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좀 없애자 하는 취지지 조정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이런 곳들을 폐쇄하기 위한 목적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아서 굳이 오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 말을 믿고.

이게 법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니까?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이 법은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적용은 이 법에 따라서 첫 학교 폐쇄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조정훈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아까 국장님과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내에 미인가 학교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만드셔서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학교 그건 공개하시는 거지요, 가이드라인?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당연히 교육청으로 가니까요.

○**조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가이드라인은 저희 방에도 보고를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18, 19항도 같은 법률개정안이 있으므로 추후에 함께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 심사 내용인데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대학 학생들과 취업 전 학생들에 대한 필요한 지원이기 때문에 입법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한정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별도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개정안에 지방의 저소득층 학생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또 지원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는데요.

제가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먼저 좀 의견을 드리면 지난번에 고작 1년에 8만 원 주는 걸로 오히려 학생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된다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위에서 지난번 통과시켰던, 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해당해서 6구간까지지는 저희가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 당시 그분들이 받게 되는 금액도 1인당 연간 10만 7000원이었습니다. 10만 7000원이었을 때는 왜 그런 주장들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에게 그냥 이자 상환 문제에 대해서, 즉 8만 원이 소액이라는 지적을 너무 많이 하셔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지역인재장학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전액 장학금도 있고 일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장

학금은 총 800억 원 정도 국가가 지금 쓰고 있고요. 또 2유형 장학금은 총 561억 원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학자금 대출 지원 사업 영역에서는 지역대학 학생들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핀셋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마음 같아서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무상교육 시키는 게 좋지요. 그러나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핀셋으로라도 사각지대를 좀 줄여 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전국으로 다 넓히자라고도 주장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고등교육 예산이 그렇게 막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시기에 구간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면서 약 4000억 원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는 현실적인, 갖고 있는 예산 중에서 배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우려점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시겠습니까,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고민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효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대학을 졸업한,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 후 학자금을 갚아 갈 때 8만 원이 도움이 될 거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 대학의 선택권 중에 수도권 대학을 포기하고 지방대학으로 갈 학생은 아마 없을 거다라는 제 입장도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86억 원의 총예산 중에 비수도권 48억은 예산이 있는데 수도권을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38억 원이 없다 하는 얘기도 솔직히 웅색하게 들립니다. 지금 교육부 예산이 100조가 넘는 이런 상황에서 38억 원이 없어서 수도권 학생들한테는 줄 수 없다 이 논리는 정말, 이걸 정말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겹겹이 쌓이면 언젠가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법에 과연 실효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면 이 8만 원 법을 만드는 대신에 지방대학을 갈 수 있는 조금 더 의미 있고 또 영향력도 큰 정책을 고민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김준혁 위원님 한말씀하시겠어요?

○**김준혁 위원** 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관련해서 길게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존경하는 조정훈 감사님께서 충분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합의 처리되는 거는 좀 어려운 거 같아요, 기권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일주일간 숙려가 좀 있었으니까 이 법안을 또 연기하는 건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천상 표결로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계속 법안소위를 빠르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김민전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한 6만여 명이 대상인데요. 법이 공포되면 6개월 만에 이거 전산 작업은 다

되나요?

○**교육부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6개월 시간 주시면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학생들이 신청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신청 베이스로?

○**교육부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6구간 구간의 학생들을 저희가 골라내서 이자 면제를 해 가지고 통보하는 그런 부분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뭐라도 좀 도움을 주자는 아이디어들이 국회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셔서 저로서는 참 당혹스럽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사실 천원의 아침밥 지원제도라는 것도 그 가격으로만 따지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조차도 많은 대학생들이 열광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여기저기서 다 시행하자고 여야가 동시에 다 얘기합니다. 그만큼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는 것이고 더 할 수 있다면 저희가 또 추후 다른 법안 개정들을 통해서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또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정훈 위원님께서 지방대학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갖고 계시다고 하셔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이것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두 분은 기권이신 거네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8인,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소위자료 2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인프라 활용 측면에서는 주민들에게는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없는지 여부, 기존 평생교육기관의 경합 등에 대해서 교육부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하기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항목들에 대해서 지금 자료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정리를 해 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위원장님.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실시 관련해서는 지난 소위 논의 후에 저희가 관련 기관과 각 대학의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내용에서 보시듯이 전체적으로 법적 정합성에는 문제가 없고 또 기관·단체들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지금 외국교육기관은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특례 적용으로 사실상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이런 법하의 어떤 제재를 대부분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법 체계 밖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자체 지원은 받고 있더라고요, 이 외국교육기관이. 교육청이나 교육부 같은 경우는 승인만 해 주고 예산 지원은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점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교육부에서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경우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지도·감독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고.

현행 외국교육기관법도 외국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지도·감독이 가능한가? 회의적인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도·감독이 된다면 교육부 어느 국의 어느 과에서 지도·감독을 할 것인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 그리고 고등이 3개소, 5개소 이렇게 있는데요. 초중등 같은 경우는 교육감 그리고 고등 같은 경우는 교육부장관이 지도·감독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개정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을 하게 된다면 평생교육법상 3조,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이 평생법이 적용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외국교육기관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법이 다 외국교육기관의 지도·감독에 활용이 되게 되는데요.

평생교육법상에도 보시면 장부 등 서류 조사라든지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이런 조항이 있고 더해서 여전히 외국교육기관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외국교육기관 관련한 법 9조의 지도·감독 또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두 과에서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승아 위원 어느 과에서 감독하게 되나요?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기본적으로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고……

○백승아 위원 국제교육과요?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예, 국제교육기획……

○백승아 위원 평생교육이 아니라?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다만 평생교육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해 주시면 29조에 ‘학교 등’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법체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교육법인이 만든 이렇게 좋은 평생교육이 있으니 이 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도 베풀겠다 이런 취지인 건가요?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예, 그런 취지가 좀 크고요.

사실 지금 외국교육법에 해당은 안 되지만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외국인학교가 있습니다. 3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외국교육 수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활용이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외국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법상의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법을 개정해 주시면 유사하게 그런 수요를 한정된 지역에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백승아 위원 저는 지난 소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외국교육기관이면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잘 가르치면 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까지 시혜적으로, 무료 강의로 아니잖아요. 다 요금 받아서 외국 법인이 지금 사업하겠다는 걸 우리나라에 열어 주는 건데 외국 법인의 사업 영역을 열어 주면서 그것에 대한 제재, 아까 시정명령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제재나 행정처분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외국교육기관 특례법이랑 충돌되면 우선 적용하는 건 기준이 뭔지, 외국 법인이 아니라 국내의 다른 평생교육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은 없는지 다 검토를 하신 건지 궁금하고.

앞으로 이런 외국교육기관이, 지금 이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법에 준용될 그런 기관들도 다 허용해 주는 것으로 수정안 작성하신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평생교육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 외국교육법인이 사업을 더 할 수 있게 열어 주는 데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인지.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첫 번째는 사업이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외국교육기관의 어떤 활동 영역의 범위를 넓히기는 하는데, 다만 비영리 법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부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약간 영리적인 면에 대해서는 조금 그 기관의 특성이 있는 면은……

○백승아 위원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어요.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지원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백승아 위원 저는 지자체 지원받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외국교육기관들이.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 할 때는 인천시라든지 이런 데서 그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투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지금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승아 위원 법이 바뀌면 평생교육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평생교육법상 경비보조 조항이 있기는 하고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상의 근거는 평생법에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생기는 거지요.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예,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 안 가는데 준비가 충분히 됐는지 검토를 해 보신 건지 여쭙보는 겁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을 하면 고등교육기관은 주로 평생교육원을 별도의 부설기관으로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지자체에서 고등교육기관에 있는 평생교육원을 직접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여기도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자체, 물론 유료 강의를 통해서 할 텐데 과실송금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도 대학에 쓰일 수 있다 대학의 학생 교육에도 같이 포함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과도하게 걱정하실 정도로 평생교육이 수익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백승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저희 자료 3페이지에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관운영경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리·감독을 고등은 교육부장관이, 초중등은 관할 시·도교육감이 한다.

그다음에 기존 평생교육기관 간의 경쟁 문제에 있어서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만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폭넓게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게 막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백승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것이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돼서 특별한, 아마 경제자유구역 도시에 계신 의원님이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지역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문을 여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 그 취지가 잘 살 수 있게 해 주시고 전국에 있는 다른 평생교육기관의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한 제도개선들은 교육부가 계속 관심을 쏟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질문인가요?

○**조정훈 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예.

○**조정훈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는 큰 틀에서 평생교육의 선택지를 넓힌다 이걸 이해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이유든 자신들의 예산을 외국교육기관에 주어서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돕겠다라고 결정하면 그 또한 그들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지금 그 대상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근거 법률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법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따른 교육기관만 인용을 하고 그 외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새만금사업 특별법, 주한미군, 기업도시개발, 신행정수도 등등 다른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하려면 다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답변 주십시오, 교육부.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포함할 수 있도록 대체 문구를 주셨고 다 포함되는 걸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요? 그게 어디에 있나요? 아, 15페이지에?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예.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조정훈 위원님의 궁금증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김민전 위원 저도 질문 하나만……

○소위원장 고민정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저도 이것 질문인데요.

사실 아마 국제학교에 평생교육원이 생기면 어떤 면에서는 또 인기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외송금은 안 되고 각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익이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가격이 일반 대학이나 이런 곳보다는 상당히 비싸 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특히 기업과 협약을 해서 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통제 방법은 있나요?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저희가 평생교육법 관련 조항 그리고 외국교육기관 관련법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확하게 여기에 과다한 부과금 과다한 금액 이런 조항이 구체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지도·감독과 시정명령 이런 조항들을 적용해서 충분히 관리·감독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이 법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외국 대학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제가 이 법을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는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대학을 활용해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내용 때문에 이 법이 발의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학이 이걸 통해서 수익 구조를 얻는다든가 이런 개념하고는 별도의 개념이고요.

오히려 거꾸로 지역 주민이 교육의 어떤 이익을 더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외국 대학한테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외국 대학이 들어와 있고 또 제주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허용해 줌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저는 충분히 이 법안에 좋은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앞으로 평생교육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수를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수요가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부분에 대한 걱정들도 있으신데 그건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해서 관리·감독은 교육부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예.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8페이지의 하단 내용인데요.

지난 소위 때 평생교육법 김문수 의원님 안을 통과시키면서 평생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교육기관이 포함되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보수교육을 하도록 같이 포함시켜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과 관련해서는 부처에서 제시한 것처럼 외국교육기관법 외에 준용하는 다수의 다른 기관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렇게 하시지요.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부터 7항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 세 가지 개정안들은 총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지난 소위 논의에서 첫 번째 내용인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은 도입하는 결로 합의를 하셨고요. 두 번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그냥 5년으로 하는 결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 언제로 할지, 언제부터 시행할지 이 문제에 관해서 교육부의 설명을 들으시고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 지난번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11월을 저희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니 사실 다른 나라들은 9월에 학기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11월이면 상대적으로 학기 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5월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데 스승의 날 등등을 고려할 때 5월 넷째 주 월요일로 해서, 넷째 주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날짜에 대한 지적을 그때 백승아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5월 넷째 주 월요일로 하면 괜찮을까요?

○백승아 위원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1월인 게 외국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9월에 시작이니까 11월이면 두 달 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두 달 후면 5월이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추가 의견은 없으실 것 같고요.

○조정훈 위원 정성국 위원님도 괜찮으세요, 5월?

○정성국 위원 말이 없다는 것은 동의라는……

○소위원장 고민정 괜찮다는 뜻이지요.

의사일정 제12항……

○전문위원 윤상열 위원장님, 이 법 관련해서는 부칙규정을 조금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12페이지 보시면 5월 넷째 주 월요일로 하면서 교육부는 어쨌든 이 시행은 27년 1월 1일부터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논의하셨던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관련해서 이것은 권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 적용하더라도 문제는 없는데, 지금 2개의 개정안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서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진행되는 폭력사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내용으로 하기를 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올해 학사일정이 이미 다 시작이 돼 버려서 27년부터 시작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해당 법률은 12항에 같은 법률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함께 의결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

○소위원장 고민정 예, 뭐 정리할 게 있나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게 2건인데요. 하나는 27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12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에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이것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 이후에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적용하자는 거지요?

○전문위원 윤상열 아니요. 지금 현재 2개 개정안의 내용은 진행 중인 사건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회도 바로 적용을 하자는 내용인데 교육부는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학폭사건 같은 경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행 이후 새로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어떠세요, 위원님들?

그러니까 새로 심의 들어가는 것부터 적용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도……

○박성준 위원 법은 소급적용이 안 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정성국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새로 오는 것부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된다’ 이런 내용으로 바꿀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8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2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재단법 사업에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반영하는 내용이고 주거복지 향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금으로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금 이외의 재원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 부분은 수정의견 사항인데요. 6조 1항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2항에 별도로 신설하면서 주거복지 증진 사업의 내용을 좀 구체화했습니다.

2항의 내용은 ‘재단은 기숙사 운영 및 관리 등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지금 하게 되는 사업 내용들은 박스에 보시면 대학생 주거중

합플랫폼 개발·운영, 기숙사에 대한 분석·공시, 지방학사 운영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2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불가항력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문제와 대학별로 이미 자율적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입시에 있어서 혼선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현재 구제절차가 각 대학별로 있고 또 일률적으로 이 사유를 정하게 되면 대학 현장에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장 많이 논의했던 건 불가항력을 어디까지를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준 마련하는 게 좀 어렵고 이미 대학들이 또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저희는 반대의견이 많았거든요.

국민의힘 위원님들, 김민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 하는데 지난번에 논의된 것처럼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아주 민감하지요. 민감한 사안인데 지금 각 대학마다 이런 장치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잘돼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불가항력적이라는 상황이 그 대학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대학의 위치에서 나름 수많은 입시의 경험과 사례들을 통해서 촘촘하게 그런 사항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그렇게 크게 불거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일부 가끔씩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지 않고 나름 입시제도가 잘 진행되어 왔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이 법안은 처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오

히려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취지는 좋지만 통과로 인해서 각 대학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잘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도 들으시겠지만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 논의했을 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상 저희가 참석 안 했을 때 논의하신 거여서 저희가 지금 회의록을, 대체토론하신 내용을 다 읽어 봤는데 일단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문구와 개정안이 없어도 대학입시를 담당하는, 해당하는 대학들에서 불가항력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예외조항들을 두고 있다라는 건데 그 예외조항의 일관성 또는 어떤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주고 어떤 경우는 예외로 인정 안 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좀 있었습니까, 교육부에서?

○교육부차관 최은옥 각 대학별로 사실 이런 구체라는 것은 구체적인 케이스별로 조금씩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각 대학별로는 구체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사실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이게 일반화할 정도의 케이스가 쌓여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전에 현안 질의 때인가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NEIS가 작동을 멈춰 가지고 학생이 자신의 성적표를 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서류를 완결하지 못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 입학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수험에 있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물론 NEIS로 못 떼니까 허둥대다가 나머지 서류를 더 넣지는 않고 그냥 본인 스스로가 포기한 경우이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NEIS가 정지되었던 시간이 입시, 수험 마감기간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개인이 그냥 손해 보고 말면 끝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어떻게 구제를 해 줄 수 있겠는가. 학교에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구제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낸 법안인데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걸 보편화할 수 있을 정도의 케이스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 입법하기에는 너무 좀 빠른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손해 보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대학교 보내는 분들은 학교 등록금 마감일을 못 맞춰 가지고, 그걸 모르고 있다가 등록금 그냥 계좌 이체하면 되겠지 이러다가, 과거에는 또 그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고 그 은행에서 보내야 되고 이래서 등록금을 못 내서 입학이 되고도 취소되고 이런 경우들도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충분히 항의할 정도로 케이스가 막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긴 합니다마는 시기상조다라고 한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자료 2페이지입니다.

본 2개의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학습지원교육의 수행과 관련해서 담당교원 지정과 업무분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강경숙 의원안에서는 관련해서 아예 전담교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먼저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법에서는 담당교원의 지정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시행령에서 담당교원의 수업시간 수, 업무 분장 등 근무여건을 조정하는 내용도 재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에 직접의무로 규정하는 게 김준혁 의원님의 안이고요. 강경숙 의원님은 아예 전담교원을 배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현실상 학습지원 담당교원으로 지정되더라도 본인 본래의 수업이나 이런 일 때문에 학습지원 업무 외에 행정업무 말고는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담교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교원 정원과도 관련되는 문제라서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래서 교육부는 7페이지 이하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초학력 전문교원’으로 변경을 해서 일차적으로 전문교원을 배치하되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전문교원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교육부를 통해서 이 전문교원의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내용을 들어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지금 현재 총 5개의 시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 편중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이라고 봤고 교육부도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단 앞부분의 교육부 설명을 들으시고 논의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기본적으로 초·중등학교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1명 이상 지정·운영 중이고, 그런데 대다수가 교과담임교사를 겸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두어야 한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학습지원 전담교원이라는 명칭으로 했을 때는 교원 정원 운영, 학교 배치 등에 있어서 굉장히 경직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어를 기초학력 전문교원으로 해서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지금 학생들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취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이랑 충분한 합의나 준비 없이 법률로 먼저 의무화부터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의 교육정책들이 반복되어 온 어떤 과거의 부작용을 재현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교육청, 교원단체, 행안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냈는데요. 저도 이 법안을 보고 가장 먼저 들었던 걱정이 학습지원 담당교원으로 지정될 경우 수업시수를 또 행정 업무를 줄여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교원을 추가 배치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원의 수는 그대로고 수업시수도 그대로고 업무도 그대로인데 이렇게 담당교원을 지정하고 수업시수와 업무량을 조정해 준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게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업시수가 보통 초등교사 같은 경우에 한 주에 23~25시간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줄여 주는 케이스는 16시간, 17시간 정도인데 이런 경우는 교과전담교사를 맡아요. 그러면 누가 교과전담교사를 하느냐? 보통 교무부장, 연구부장이 합니다. 그런데 교무부장과 연구부장은 그 학교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담임을 하면서 부장 업무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학교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는 수업을 제대로 못 하겠지요. 수업 준비 제대로 못 하고 그냥 대충 가르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교원의 추가 배치라든지 업무 분장, 인력 지원, 행정 부담 완화 이런 방안들을 고려한 어떤 구체적인 운영 모델 또 검토의견 이런 것들을 현장과 충분히 교감하면서 운영 모델을 만들지 않고 법률부터 통과되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시수는 그대로고 아이들도 그대로고 업무도 그대로인데 전문인력을 딱 지정해서 이 사람은 수업시수 조정해 줘라 이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그러면 교과전담교사를 기초학력 전문교원에게 줘 버리면 교무부장과 연구부장은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 담임 하면서 업무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취지에는 너무 공감을 하고, 사실 국가가 나서서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에서 교원단체랑 검토의견을 들으면서 어떤 운영 모델을 만드신 후에 조금 더 숙의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저희가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있는 인원이 아니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래서 26년에는 653명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교에 1인씩을 추가로 더 둘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배치를 위해 노력을 하더라도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기존 정원 중에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학교가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백승아 위원** 융통성 있게가 어떤 말씀이실까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융통성 있게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지금 이 법안의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배치한다고 하면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그 업무만을 하는 교사를 배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기초학력 전문교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그래서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노력을 하지만 그 외에 기존에 시수가 적거나 또는 조정을 통해서 기존 교사들 중에서도 전문교원을 지정해서 하는 그렇게 두 가지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어를 조정해 달라 하는 의견입니다.

○**백승아 위원** 거기에는 제가 이견이 없고요.

제 말씀은 이게 의무화가 되고 수업시수랑 업무량을 조정해 주게 되면 그대로인 수업시수와 업무는 다른 교사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통, 제가 딱 현장에 있어 봤으니까요. 그러면 전문교원을 교과전담교사로 지정할 확률이 큰데 그것은 교무부장, 연구부장이 맡아서 하는 게 보통이고 그래야 됩니다. 부장들이 담임 하면서 못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현장 교원단체나 이런 분들과 논의를 해 보시고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고민정**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면 26년에는 653명이라고 배치 현황이 되어 있는데 한 학교에 1명씩 다 배치했을 경우에는 몇 명이 필요합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한 학교에 1명이면 소규모 학교까지 다, 일단 현재 1만 2000개 학교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 정도……

○**소위원장 고민정** 현실적으로 이것을 다 배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

○**교육부차관 최은옥** 추가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말씀이 1명씩 다 배치할 수 없으니 당장에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하고 그래서 절충안을 내신 것 같은데.

정성국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평소 법안심사소위 할 때 길게 잘 안 하는 편인데 이걸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준혁 위원님 앉아 계시는데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김준혁 위원** 괜찮습니다.

○**정성국 위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배치를 653명 한다지만 1만 2000개 학교 중에서 653명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승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만약 학습지원 담당교사의 수업시간 수나 업무 분장을 조정해 준다면 이 부담이 고스란히 다른 교원에게 가게 됩니다.

2월 말이 되면 선생님들 업무 분장하는데 나에게 어떤 업무가 떨어질지로 선생님들이 밤잠을 설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업무가 떨어지지 않을까. 특히 학교폭력이라든지 NEIS라든지 방송 이런 업무 떨어질까 봐 치열한 내부 경쟁, 로비, 호소, 읍소, 학교장들이 머리 터질 정도로 괴로워지는 시늉인데 취지가 좋지만 현장에서 어떤 한 분의 어떤 한 역할의 업무나 수업시수를 줄여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교과전담교사가 초등학교 경우에도 몇 분 계시지만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과전담교사 같은 경우는 입대를 앞두고 있는 선생님, 담임을 줄 수 없으니까 곧 4월 달에 군대를 가야 되는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임신 중에 있는 선생님 또는 너무 몸이 좋지 않은데 담임을 맡기는 어려우니까 교과전담으로 빼 주는 경우, 교과전담교사를 희망해서 교과전담 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학교가 이렇게까지 절실한 상황인데 학습지원 담당교사라는 취지 하나로 이런 조치 이런 형태로 법이 만들어진다면 학교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고, 또 여기에 지금 의무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학교장은 필요한 조치를 해라, 수업시수 및 업무 분장에 대해

서 의무적으로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학교들이 학급 수가 많이 줄어 가지고 6 학급 이렇게밖에 안 되는 학교도 많아요, 한 학년에 한 학급. 선생님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업무는 고스란히 다 똑같습니다, 40학급이든 10학급이든. 10학급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폭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10학급이라고 해 가지고 NEIS가 없는 게 아니고 방송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적은 학교는 업무를 많이 맡을 수밖에 없어요. 업무에 차이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의 학교장이 선생님들 10명도 채 안 되는데 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분은 학습지원 담당교사니까 이걸 줄여 줘야 된다, 수업시간 수를 줄여 줘야 되고 업무 분장을 조정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요 학교장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교육부에서 각 학교마다 1명씩 보내 주는 거지만 불가능하잖아요. 행안부에서 이걸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줍니다, 교원 정원에 걸려 가지고. 그리고 어찌 보면 1만 2000명 중에서 653명이라는 이 숫자에 우리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감,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아예 그냥 지금, 존경하는 김준혁 위원님께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절실하고 절규가 많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은 학교 현장에서 이 법이 가지는 효과보다는 우려 또는 교원들 서로 간에 소통에서의 불협화음이라든지 학교 경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저도 교육부에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두 분 교사 출신 위원님들께서 교사의 업무 부담에 대한 현장에서의 실질적 어려움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학생은 없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조금 질문을 하고 싶은데, 사실 사교육을 경감시키고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합니다.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기초학력이 보장되어야 사교육도 안 갈 텐데, 물론 더 잘하기 위해서 사교육 가는 학생들도 많지만 학교에서의 공부만으로는 원하는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런 걸 공교육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는 여기에 대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학생은 도대체 누구한테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늘상 교원들과 관련된 법안심사를 하다 보면 교사들의 현재의 어려운 상황들은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만, 정작 그러면 학생들은 어디에 가서 배워야 되고 누구한테 고민을 털어놔야 되고 누구한테 갈등 조정을 배워야 하는지가 다 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만이라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국회에서는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조소 섞인 말로. 표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야 되는 것은 교육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위원들을 설득해 주시고 교사들도 설득해 주시고 그렇게 가 주셔야 되거든요.

기초학력에 미달된 학생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생님들 업무가 부담돼서 어렵다,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그러면 이 학생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차관님?

○**교육부학교지원관 유지완** 담당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이 당연히 발생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은 지금 현재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들이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 현장에는 학습지원 담당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교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습지원 담당교사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관련 행정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계시고요,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의 정원을 증원해서 기초학력 업무를 전담해서 하실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기초학력 전담교원을 모든 학교에 1명 이상 배치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교원 정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학교에 1명 이상 배치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초학력을 제대로 갖추도록 지도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와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 정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선생님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어서 저희도 이 법안을 마련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낸 안을 보시면 ‘교육감은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1항에 정리를 했고요. 2항에서는 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원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절충안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교원 정원이 빨리 더 많이 확보가 돼서 모든 학교에 기초학력 전담교원을 배치해 드리는 건데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 조항에 교육감에게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조항을 바탕으로 행안부 등과의 정원 논의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을 받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교의 현실은 저희가 많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는 추가 배치가 안 되면 솔직히 기초학력 전담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을 두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특정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판단해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 조항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백승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 현장에 이것 관련해서 안내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난 2월 말에 기초학력 전문교원 운영 기본방향이라고 하는 내용을 학교 현장에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희가 명칭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의해서 기초학력 전담교원이 아니고 기초학력 전문교원으로 변경을 하고 이 기초학력 전문교원은 일부 수업시수를 활용해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협력수업·분리지도를 실시하고, 지금 이 관련 법안에 대해서 교원단체와 학교 현장에서 다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은 예전처럼 전담이라고들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담을 하는 교원이 나오면 당연히 부담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이 아니고 전문교원이라고 명명을 하고 수업시수 중에 40% 이상을 전문적인 협력수업이나 분리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바

꿔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26년도 관련해서 학교에 추가로 배치해 드린 정원이 500명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기초학력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다른 선생님들이나 학생에게 너무 도움이 된다 해서 오히려 시도에서 저희가 드린 정원보다 더 많이 배치를 해서 현재 배치돼 있는 교원 숫자는 653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백승아 위원님 하시고 정성국 위원님.

○백승아 위원 제가 교사일 때 강원도에 재직을 했는데 발령 초에는 제가 저희 반 기초학력이 안 되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휴직하고 와 보니 두드림 이렇게 해서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문강사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뽑아서 학교에 보내 줘서 그분들에게 아이들을 방과후에 보내서 기초학력을 가르치게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기초학력을 보충하는 방식이 다른 건데,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 교실에 가서 배우는 것이 창피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공부 같은 느낌이니까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안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반에서 담임교사가 그 아이를 제일 잘 알거든요. 지금 초등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가장 잘 알아서 방과후에 10분 20분, 아니면 남기는 게 싫으면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이라든지 아침 시간이라든지 뭔가 유연적으로 시간을 내서, 저는 담임교사가 가르치는 게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었고요. 제가 수당 안 받아도 그렇게 했었고요. 학교에 돈이 없어서 문제집을 못 사 주면 제가 아이들보고 수학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한 권씩 사라고 해서 아이들이 풀 때마다 과목 진도에 따라서 풀어 오라고 하고 집에 가서 각자 채점해 오라고, 틀린 것은 제가 봐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게 또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다른 강사분에게 보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교사가 힘들니까 기초학력 보충을 못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무화 법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문교원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현실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수업시수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장과 소통을 해 보시고 운영 모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시라는 거지요.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담임교사가 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여건을 조사해 보고 연구를 해 보고 해야겠지만 이렇게 기초학력 전문교원이 있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임교사가 학생의 어느 부분이 얼마큼 모자라는지 제일 잘 아는데 이것을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지도 저는 사실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연구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을 지금 당장 의무화시켜 버리면 현장에서 혼란이 올 게 뻔한데, 지금 말씀드릴 게 여러 가지 너무 많은데 말이 길어지니까 아까 다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담임교사가 보충지도를 했을 경우에, 수당도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건은 점점 열악해지는데 이런 전문교원을 만든다?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고.

기초학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 해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어릴 때부터 유튜브

브를 보고, 식당 한번 가 보세요. 아이들 다 유튜브 보고 있고 책 읽는 시간 줄어들고 부모와 대화 시간 줄어들고 상호작용하는 시간 줄어들고. 저희 애 같은 경우에도 놀이터에 가서 놀지를 않아요, 나가도 아무도 없어서. 주말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 하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것을 교사 개인이 일하기 싫어서, 일이 힘들어지니까 못 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등 같은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그리고 기초학력은 초등이 가장 중요해요. 이때 놓쳐 버리면 중고등 가면 갭이 너무 커지고 포기하는 학생들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담임교사가 행정 업무나 여러 가지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서 아이들 기초학력을 키워 줄 수 있는 방법을 교육부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 이대로 의무화하는 것은 저는 혼란스러움을 야기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성국 위원님 하시고 서지영 위원님.

○정성국 위원 국장님, 좋은 제도는 교육부가 다 만들려고 그리고 부담은 학교로 다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전형적으로.

지금 여기 이 업무 맡으라면서 선생님 증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맞지요? 선생님 증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교원 증원하는 것 들어갑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요. 그렇지요? 사회적으로나 학부모나 요구는 많으니까 정책은 만들어야 되겠고 성과는 내야 되겠고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실제로 운영하고 해야 되는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의 입장 같은 것은, 결국 부담은 학교로 가는 것이고. 제 말이 틀렸어요?

○교육부학교지원관 유지완 아닙니다.

○정성국 위원 차관님께도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로만 요즘 학교가 힘들고 선생님들이 힘들고 명퇴자가 늘어나고 신규 교사마저 그만두는 세상이라는, 말로만 그렇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 마시고, 교육부가 이렇게 그럴듯한 정책 내놓는다 해 가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왜? 현장에서 못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취지가 좋지만 교원 증원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런 업무들이나 이런 내용들, 수업시수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 나눠서 떠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맞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인 못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으며, 학교에서 얼마나 공감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에 얼마나 적용이 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내실 있게 이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부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고하시라고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이 법안은 저희가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구요.

○김준혁 위원 아니, 그 법안은 제가 낸 거잖아요.

○정성국 위원 아니,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게 학교 현장을 모르고……

○김준혁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마무리하지요.

○서지영 위원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법안을 제가 냈으니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나올 것 같네요.

○소위원장 고민정 잠깐만, 김준혁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이 질문 있으신 것 같아서.

○서지영 위원 제가 이 법안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것이 우리가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일어날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경청하면서 쟁점들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도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초학력이 최근 들어서, 아마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급격하게 저하됐다는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4세 고시까지 애기가 되는 판에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기초학력 저하인 그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아마 교육부가 당면한 행정적 문제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논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왜 교육열이 이토록 높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증가할까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그 진단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이렇게 저하되고 있을까, 그러면 그 기초학력 진단이라는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한 다음에 대안들을 내놓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 정성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법안도 내기는 하겠습니다.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법안도 우리가 막 내고 하는데, 저는 교육부가 그렇게 심층적인 접근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책 위주로 어떤 숫자 위주의 대응책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기초학력 부진에 대해서 심층적인 검토가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검토가 선행돼야 되고 그러면 기초학력 진단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이들 기초학력 검사한다 어쩐다 하면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쟁점이 생길 수 있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체계적인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습지원 담당교사, 기초학력 전담교사 이렇게 양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계획은 현재 300명 정도에서 600명 정도를 늘리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에 1명씩 배치되었을 때 정말 기초학력 증진이 있었을까요? 계속 증가돼 왔는데 기초학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올바른 대응인가. 사실은 그냥 행정적 대응으로 머물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는 교사만 증원되고 실질적인 기초학력 증가는 미미했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기초학력은 아까 백승아 위원님 말씀 중에도 잠깐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학

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정서적인 요인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서적 요인과 학습 방법에 대해서 무지하다든가 부족하다든가 그다음에 가정적 문제가 있다든가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그게 지원교사만 한 명씩 기계적으로 배치하면 과연 향상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보여 주기 식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똑같은 얘기들을 앞으로도 반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고 난 뒤에 이러한 법안이라든지 대응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제가 낸 내용하고 강경숙 의원님이 낸 것은 약간 차이가 있지요. 강경숙 의원님 것이 사실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예 교육부가 티오도 다 내고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1만 2000여 명의 교사를 다 배치하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일종의 교육지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지요.

오늘 두 분의 말씀도 잘 들었고요. 또 이 부분이 현장의 상황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측면들도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의 의견을 잘 듣고 좀 더 교육부하고 차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내가 진짜 옛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 교육을 고전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 초등교사 시절을 생각하고 내가 그랬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또 대학에 있을 때 우리 총장님이 일을 저한테 무지하게 시키는 거야, 그냥. 특하면 이것도 해 달라 이것도 해 달라 그러면 제가 거절을 못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산더미같이 늘어났는데, 여기 올 때까지 아주 죽어라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만 하다가 왔구나 하는데, 두 분의 말씀이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법안은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잘 준비하고 해서 다음에 좀 더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강경숙 위원님께는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예.

○김문수 위원 아니, 그런데 법안에 보면 뒤에 다른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자, 이 안도 다 그냥 넘기는……

○김준혁 위원 아니, 이 법 자체가 유보되는 거니까.

○김문수 위원 이대로?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보류가 아니라 통과가 되기 때문에.

○김문수 위원 예.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자료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주 소재 국제학교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서 이들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주의 국제학교는 4개교의 내국인 재학생 비율이 90% 이상임을 고려하면 필요성이 있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제주 국제학교가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 전학 조치 등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제주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입장은 제주특별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본법에서 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제주 국제학교는 적용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학폭법만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지금 차관님의 말씀에 상당히 동의도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라고 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어도 퇴학을 못 시킨다든지 혹은 특히 성 관련된 폭력이든 추행이든 있었을 때에도 그 학생을 그대로 학교에 다니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 교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칙상에 학교를 내보내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학교폭력법과 다른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교육적으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체계고요. 자세한 건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 8페이지 보시면 제주 국제학교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각 학교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KIS라든가 NLCS라든가 각각의 내부적으로 어떤 폴리시라든가 이런 규정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또는 지도라든가 또는 정확이라든가 퇴학이라든가 각각의 학칙에 따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완전히 학생들에 대해서 학폭법을 꼭 규정해야지만…… 학생에 대한 징계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들 고민되는 부분들은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법체계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제주특별법은 특별법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서 만일 규정상 허용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법을 가져와서 일반법에서 규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특별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어떤 어떤 사례를 제외하고’ 특례를 규정하지 않으면 적용을 못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법을 풀려면 일반법에서 설령 규정한다 하더라도 특별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들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사실 법 적용에 여러

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학폭법만이 규정을 해야 된다면 제주특별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오히려 법체계상 맞지 않겠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민전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법체계상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부가 현실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교직원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실사라는 게 정말 짝 나가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실태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실제 어떤 유형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학생이 퇴학을 당했다라든지 아니면 그 학교는 특수학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그냥 계속 학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는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우선은 저희들이 개별적인 통계조사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현행 제주특별법에서는 여러 가지 특례가 적용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교육감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계라든가 현황조사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 자율성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어떤 학생이 며칠에 어떤 사고를 쳐서 어떤 징계를 받았고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보고를 받지는 않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제주도 교육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제주특별법이 행안위에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갔습니까?

○**교육부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현재로서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상정까지 되어서 법안소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그쪽에 적극적인 설명은 하셨고요?

○**교육부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일단 해당 법은 행안위법입니다, 저희 교육법이 아니라. 따라서 행안위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법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행령을 정하게 될 때 의견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이 적절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행안위에서 특별법으로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 그쪽에서 먼저 법안 통과되는 게 맞다 하는 말씀 같은데 거기에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이 제주특별법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통합시법들도 전남광주가 하나 통과됐고, 대구경북 충남대전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이미 강원특별법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학교와 관련된 것들은 다 특별법으로 그냥 넘겨만 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고민이기는 합니다. 특별시법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교육자치 쪽에서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앞으로 상임위 법안 논의는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별 전문성이 없으신 다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법안을 심사해야 되는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전국이 다 통합시가 돼 버리면 특별시가 되면 교육부는 어떻게 될 해야 되는 건가 하는 문제의식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행안위에 지금 있으니 그건 그거대로 먼저 지켜보는 것으로 하시되 향

후에 특별시 특별자치도의 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교육부가 어떻게 할 건지는 좀 고민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교육부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정부 체계 내에서는 새로운 법률이 입안되면 지난번과 같이 관계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그 해당 법률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면 해당 부처에서 발의한 시행령의 관계부처 의견 조율을 합니다. 하다 보면 저희들이 관련된 내용이 고등교육이면 고등교육 관련된 부서에서 또 초중등교육이면……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은 교육부에서 하시지만 법안에 대한 심의는 저희 교육위원들이 못 하잖아요, 특별시법에 들어가 있는 교육 관련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부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질의이신가요?

○**조정훈 위원** 저도 추가 조치 좀 요구할 게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말씀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큰 틀에서 동의하고요. 다만 교육부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관계부처의 입장에 대해서 저는 좀 실망스럽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 국제학교 4개밖에 안 되는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현황이 매년 수십 건이고 2023년에는 50건이 넘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의 수준인데,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금 모든 학생, 우리 대한민국 내국인은 어느 학교에 다니든지 관계없이 학교폭력으로 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주교육청에서 지금 신중검토라고 하면서 ‘국제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 이게 반대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주교육청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록에 남기고 제가 제주교육청하고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만 김용태 위원께서 법안소위가 아니어 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많이 제공해 주셨는데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까지 받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의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특별법 개정도 가능하지만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법률 입장인데 그건 좀 따져 본다고 치더라도, 제주에 있는 학교는 제주특별법의 영향을 받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거로는 인천 대구 등에 있는 국제학교는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외국교육기관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요? 그러면 외국교육기관법상의 국제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똑같이 사각지대인데 그 법을 개정할 의지는 있습니까? 이건 누구한테 핑계 댈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자율성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교육부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따로 관련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각 개별법에……

○**조정훈 위원**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제주는 특별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교육부에서 관할하

는 외국교육기관법상의 국제학교들이 3개나 있는데 우리 지금 제주 4개 갖고 하자는 건데 그러면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것만이라도 먼저 해서 제주교육청 등을 설득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조정훈 위원** 이 법에 대해서는 좀 빨리 입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짧은 질문인데요.

국제학교에서 전학 조치가 되면 국제학교로만 가야 됩니까?

○**교육부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학 조치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기본적으로 전학을 하려면 적어도 전학을 하는 학교장이 아니라 그 위에 교육감이라든가 누군가가 전학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쉽지는 않아서, 학교별로 전학을 조치해야 돼서 행정 처리상으로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사실 이 학교들이 다 기숙학교 아니에요?

○**교육부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맞습니다.

○**김민전 위원** 기숙학교의 경우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24시간 계속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행정상 어렵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있어도 그 학교에 계속 머물러야 된다,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가혹하지요.

○**서지영 위원** 저도 하나 질문……

○**소위원장 고민정**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국제학교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도 많은 국제학교들이 있고 여기 공직 계신 분 해외 파견 나가실 때 다 국제학교 보내셨지 않습니까? 해외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교육부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정확한 상황은 잘 안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학이라기보다는 보통 정학 처리를 하고 정학으로도 안 되는 상황이면 징계 절차를 통해서 퇴학 처리를 하고 퇴학된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다시 가는 것으로, 즉 말하자면 일반적인 전학이 아니라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지영 위원** 제가 볼 때 제주교육청이나 제주 국제학교에서도 제주특별법에 묶여 있어서 굉장히 치외법권적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국제학교라면 글로벌 기준에 맞게 다른 나라의 국제학교들 사례에 비추어 가지고 저희가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일단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제주특별법을 바꿔야지요. 그렇게 해서 공히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어떠한 누구도 불이익을 인권적인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심도 깊게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님?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방안을 마련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해당 법안은 계속심사로 두고요.

앞에 했던 의사일정 5항 6항 7항, 3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더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고민정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자료 2페이지입니다.

2개의 의원안은 전부 다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들입니다.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 또는 행동중재전문가 그리고 이를 위한 지원 전문인력, 지원팀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학생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3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행동중재 지원 제도 관련해서 5개의 센터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그 활동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행동중재전문교사보다는 김영호 의원안에서 사용하는 행동중재전문가로서 외부 인력 활용 등 지원 업무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6페이지 이하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내용은 의무사항으로 하고 그 외 2항, 3항에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나 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로 재량적인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마지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행동중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람을 전문교사로 규정하는 경우에 새로운 교사 자격의 신설로 볼 수 있고, 또 정원 관련해서 굉장히 경직적이 되고, 또 현재 있는 학교 밖의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행동중재전문가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이건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저도 교육부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행동중재전문가분이 학교의 운영 방식이나 교육적 맥락이나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에는 충돌이 될 수도 있어서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현직 교사는 아니더라도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 이런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십사,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아까 김민전 위원님 손 드셨나요?

○**김민전 위원** 예, 간단한 질문입니다.

행동중재전문가는 따로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진창원** 행동중재전문가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는 저희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현재는 국내 대학에 행동중재전문가를 양성하는 학회들이 있고 또 외국에서도 행동중재전문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부칙에 한 1년 정도 경과규정을 주시면 현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질문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비슷한 질문을 하셔 가지고 생략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경계선 아동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지부 쪽에서는 그렇게 용어를 쓰고 교육부 쪽에서는 느린학습자라고 하는데 그거를 규정하는 게 어려워서 사실은 이쪽도 저쪽도 뭐가 진척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느린학습자로 규정되는 거에 대한 반대가 있고, 그런데 실제로 학습이 느려서 뭔가 케어는 받아야 되는 아이들은 존재하고, 그런데 갈수록 그런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교육부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검사 안에는 그런 느린학습자 같은 것도 진단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단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더 세워 볼 수 있는데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런데 기초학력은 초등학교에 들어와야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느린학습자들은 이미 1살 2살 때부터 판정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럴 수 있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사실은 그 느린학습자들은 바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부터 여러 가지 국가정책들의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친구들을 규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느린학습자로 진단은 받았지만 그냥 사각지대로 계속 1학년, 2학년, 3학년 쪽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 같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정의를 못 하던데 이거 어떻게 하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 부분은 유아 교육·보육 단계부터 파악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예, 그러면 일단 이 법은 오늘 이견이 없으시니까 통과시키고……

○**백승아 위원** 교육부의 답변을 아직 못 들어서.

○**소위원장 고민정** 알았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방금 질문했던 느린학습자를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제도 설계를 할 건

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언제 저희 방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백승아 위원님 질문에 대한……

○**백승아 위원** 행동중재전문가를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인력 활용을 할 것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해 보신 적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진창원** 아직 시행령을 만든 단계는 아니지만 시행령 단계에서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로서’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자, 그러면……

○**조정훈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고민정**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행동중재전문가 정의를 대령에서 하겠지만 특수교육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특수교육 전문교사 자격증이 있는 건 기본이다?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진창원** 예,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아까 교원 수급 문제 때문에 이것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진창원** 지금 외부 전문가 중에서도 특수교사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특수교원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학교의 총정원 관리를 행안부하고 맞춰 나가셔야 되는데 ‘행동중재전문가를 둔다’ 이걸 의무 조항이네요. 그러면……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그 부분은 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교사로서 채용해서 교원 정원을 부여하는 거랑 자격증 있는 사람을 전문가로 채용하는, 그러니까 교사 정원과는 관련 없이 할 수……

○**조정훈 위원** 교사 자격증이 있지만 교사가 아닌 법적 지위로 고용하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조정훈 위원** 그래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위원장님, 8페이지 부칙 부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조정훈 의원안은 6개월, 김영호 의원안은 1년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교육부가 공포 후 1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부칙은 1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조정훈 위원님, 1년 괜찮으시지요?

○**조정훈 위원** 예.

○**소위원장 고민정** 의사일정 제13항 및 1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 입법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잠깐만요.

이거를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안 계실 때 저희가 한 번 일독을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교육부가 야당 위원님들에게 다 찾아가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진행을 위해서 간단간단하게만 말씀을 주시고 저희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그러면 46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예.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수정의견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1조(목적)은 특이사항이 없고, 2조(정의) 부분에서는 ‘정치·사회·문화·예술 등 한국의 각 분야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국의 각 분야에 대한 연구’라고 해서 포괄할 수 있도록 정리한 부분입니다.

5조(정관) 부분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임원 및 교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고요.

제6조(사업) 부분은 한국학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한국 고전자료 관련해서 고전번역원과 약간 업무 중복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을 반영해서 교육부에서 낸 의견이 ‘한국학에 대한’, ‘한국학 자료의’ 이렇게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49페이지에 있는 임원 관련된 부분 중에서 2항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원장과 이사의 선임 기준 부분입니다.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부분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정치적 중립성, 한국학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는 수정의견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은 학술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50페이지 내용인데요. 5항에서 이사와 관련해서 이사 중에서 2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방통위나 개보위 같은 경우에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표성을 고려해서 국회 추천 몫을 넣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사 부분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차관, 문화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과 같은 부분은 당연직 이사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문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 51페이지 보시면 임원의 해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원의 해임과 관련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은 8항 제3호 ‘선거운동 또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등 편향된 정치 활동’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을 보완해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로서’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 외 53페이지 출연금 관련된 사항들은 현행법과 같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로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15조, 16조 그리고 17조, 18조 부분도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있는 자료 제공 부분도 개정안에서는 19조 제2항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았는데 현행과 같이 이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2항 내용은 ‘연구에 필요한 희귀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에게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연구상 필요할 때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 있는 지도·감독 관련된 규정 내용인데요. 보시면 20조 제3항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법례에 따라서 그냥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59페이지에 있는 부칙 관련된 내용들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2조(준비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관 개정이나 임원 선임 등을 할 준비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환위원회를 뒤서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 의견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전환 위원을 위촉한다는 내용이고 이 전환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항은 최초로 선임되는 연구원의 원장과 이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위원회가 추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을 넣은 내용입니다.

제3조(연금적용의 특례) 부분은 이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데 이 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적인 규정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조문을 신설해 주었고 일반적인 경과조치 부분도 통상적으로 있는 내용이어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61페이지 하단에 있는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수정의견의 임원 및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개정안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의 교직원으로 본다’라고 해서 임원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항에서 ‘재단법인 중앙연구원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교육부에서 제시한 수정의견을 반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7조 부분은 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인데요. 지금 중앙연구원에 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으로 보도록 하고, 2항 부분에서 종전의 재적생이나 졸업생들도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의 재적생 졸업생 등으로 보는 그런 내용을 신설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개정안은 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해서 한국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이기 때문에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저 토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예,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마치 몇 달 전에 통과했던 방통위법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매우 불편합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고전번역원과 동북아역사재단 등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서 법적 지위를 누리고 안정성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백 번 양보해서 동의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칙 조항 등등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의 이사장과 임원들은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아까 59페이지 부칙의 준비행위에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실시하고 또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전환위원회를 거의 인수위원회처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정을호 의원님의, 지금은 의원님은 아니시지만 좋은 의도를 이 부칙 등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훼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정을호 전 의원이 현 지도부를 교체할 목적으로 이 법을 발의하셨다면 이건 명백한 위인설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장과 임원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하지만 법이란 수단을 통해서 특정 인물과 임원진들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이 시도는 법 수단을 매우 왜곡한 거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건 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중요한 기관이고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거 찬성하는데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 현 이사장 등등이, 27년 여름인데 지금부터 한 1년 남았는데 준비를 충분히 해서 실행을 현 지도부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살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위에서 법사위에서도 여러 법안 만들어 봤지만 부칙 조항을 놓고 준비행위 전환위원회에 대한 부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법은 처음 봅니다. 이건 명백한 위인설법이고 누구를 잘라내기 위한 법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조정훈 위원님께서 부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여서 일단은 부칙 전에 있는 법조문들을 쭉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견들을 좁혀 나가는 걸로 하지요.

일단 46페이지에 보시면 한중연에 대한 정의 조항에서 수정의견을 보니까 정치·문화를 빼고 인문·사회·예술의 각 분야에 대한 연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지요? 있으십니까?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이건 질문인데요. 사실 한국학연구원에 정치 전문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직원 가운데서?

○소위원장 고민정 정치 전문가요?

○김민전 위원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학을 박사학위를 했더라든지 정치학을 전문으로 한 분이 아마 있을 텐데 만약에 이 법이 바뀌면 그분들은 정치·예술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리를 잃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인문·사회·예술 등 각 분야’라고 했는데 그 수정의견을 내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에서?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대학정책관 송근현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국학의 포함 범위가 인문·사회 등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립해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러니까 사회 안에 정치도 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정치학을 전공한 교수들도 부자격자가 아니다?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예.

○**소위원장 고민정** 잠깐만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정의 규정 부분이 상세히 설명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개정안과 같이 했을 때는 조금 한정적으로 해석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자체에서 ‘인문·사회·예술 등’이라고 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오히려 당사자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주신 거라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소위원장 고민정** 그리고 48페이지에 보시면 ‘한국 고전자료’를 ‘한국학 자료’로 하는 거고, 이건 고전번역원과의 충돌 때문에 그런가 보지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다음에 49페이지에 보시면 원장 및 이사는 어떤 사람으로 한다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 부탁드립니다.

큰 이견이 없으시면 수정의견에 동의하시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50페이지, 이사의 구성인데요. 이사의 구성을 개정안에서는 국회가 2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그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국회 추천 몫이 삭제가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지영 위원**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지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정관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 소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천은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현재 정관도?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예.

○**서지영 위원** 현재 정관은 없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정당 추천이 들어갔고 수정의견에서는 그걸 다시 뺐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예, 정관처럼 하는 게 저희 수정의견입니다.

○**서지영 위원** 수정의견은 현재의 정관과 동일한 겁니까?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다만 당연직 이사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끌어들이는 게 조금 낫겠다라고 해서 그 의견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교육부차관, 문체부차관, 기재부차관은 이미 다 정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법률로 올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회 추천 몫은 빼는 것으

로 수정의견을 주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 없으시면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51페이지 보시면 임원에 대해서 해임할 경우의수입니다.

선거운동 또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등 편향된 정치 활동을 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경우로 정리를 했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조정훈 위원** 지금 다른 특수법인도 이런 해임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교육 관련된 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등등 그것하고 이걸 좀 일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치된 겁니까, 수정안이?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유사입법례를 참고해 가지고 했고요. 다만 발의안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정치적 편향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나 고전번역원의 해임 규정에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고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 기관의 해임 조건에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없다?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예, 그런데 발의한 전부개정안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법안에 반영을 한다면 지금 수정의견 드린 대로 문구를 정리하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다고 해서 수정의견을 드린 겁니다.

○**김민전 위원**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소위원장 고민정**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임명할 때에도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부분이 나오던데 아마 임명 당시에는 당원 가입 여부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설마 그동안에 SNS에 무슨 글을 썼는지 이런 걸 다 뒤져 보지는 않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한다면 말씀하셨지만 이걸 어느 정도로 측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해임 규정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시책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론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지지 발언을 하는 이런 경우는 좀 명확합니다마는 그 이외에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사들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교사들이 처벌받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혼란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임명되기 전에는 무엇을 하든 그것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민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정당원이냐 이런 것들을 따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데 임명이 된 이후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발언이든 행동이든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예, 교육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심히 훼손한 케이스를 사실은 사례하고 다른 법령들이나 실태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야지만 확정을 할 수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로 보고 그다음에 연구원의 공정성 또는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에 심의·의결을 거쳐서 교육부장관이 해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이 문구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확정할 수 있을 거라고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저도 좀……

○**소위원장 고민정** 백승아 위원님 하시고 서지영 위원님.

○**백승아 위원**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우려되긴 하는데, 물론 뉴라이트적 또 극우적 성향을 보였던 기관장에 대한 염려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해임 관련해서는, 물론 서부지법 폭동도 옹호하고 리박스쿨 연루됐던 김주성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한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이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명될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될 건데 정치적 중립의 엄격성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심한 훼손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셨을 때는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부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말씀 주신 것처럼 옆에 8항의 1·2·4호가 현재 지금 저희 정관에 있는 내용이고 3호가 새로 제안을 주신 안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는 다른 입법례에도 이런 용어가 들어 있기 때문에 3호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하신 의원님의 입법 취지를 가장 많이 반영해서 이 문구라면 가능하겠다는 부분들이고요. 실제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깊이 논의는 못 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또 다른 위원님들.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저도 백승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조항이 구태여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개정안 3호 같은 경우는 굳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항에 이런 조항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학문적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손을 본다고 정치적 중립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라고 안을 쥐어짜서 내놓은 것조차도 저는 학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대한민국 과거의 역사와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전 분야와 관련되는 문화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폭넓은 학문의 자율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존중해 드리고 학자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교육부가 지향해야 될 본연의 역할이지 굳이 개정안에 이런 조항이 있다고 쥐어짜듯이 이런 안을 내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국회에서 냈나요, 이 수정의견을? 이런 것은 저는 우리나라 학계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학문적 수준 또 문화적 수준을 감안해서 이 조항은 빼는 게 맞고요.

아까 백승아 위원님도 다른 규정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훼손 안 하고 약간만 훼손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걸 이사회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 학계에 계신 분들에 대한 무례입니다, 무례.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성국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셔서……

○정성국 위원 반복인데요 저도 확인하고 싶은 게 수정의견 ‘정치적 중립성’ 앞의 전부 개정안에 보면 51페이지의 1번 ‘법령 및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체적으로 법령을 위반했거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했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하고요. ‘정치적 중립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 이것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이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 옆의 비고란에 또 그리 적어 났네요.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을 보완하여 규정했다 하셨는데 좀 죄송하지만 보완을 했다는데 저는 보완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소위원장 고민정 어디요?

○정성국 위원 59페이지의 준비행위라는 게 좀 궁금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잠깐만 위원님, 순서대로 거기까지 갈 거니까요.

○정성국 위원 나중에 할까요?

○소위원장 고민정 예, 일단 이것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일단 그렇게 할게요.

○소위원장 고민정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전문위원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불법계엄, 내란, 서부지법 폭동 이런 것들을 옹호한 것은 저는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활동이었다고 보고 그 정도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을 부정한 거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격성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자의적 해석할 여지가 없게 보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 이걸 약간 모호해 보이는데 하지만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보완책이 있을까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사실 이 자료에 있는 부분들이 부처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낸 안이고 ‘심히’라는 표현을 쓴 것이 그냥 단순히 훼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비례의 원칙에서 좀 과하다 싶은 그런 정도를 포괄하기 위해서 실은 심히라는 표현을 썼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용어는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항상 제시되는 용어 중의 하나니까 여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편향된 정치활동’이라는 이 표현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이 일반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사용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박성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 저는 깜짝 놀랐는데, 위원님들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정의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부분을 정의하라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은 어떻게 돼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얘기하잖아요.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기관은 헌법적 가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는 것이고 그게 정치적 중립성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치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의 공정성을 유지하느냐, 책임성을 다하느냐 이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인 거예요, 견제와 균형. 그래서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훼손의 의미를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토론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심히 훼손됐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의 지성이 단계에 올라온 겁니다. 그걸 왜 못 믿어요?

그러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너희들 다 열거해라. 어떻게 열거를 해요? 다 보면 그 기관 자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기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된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관에 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헌법에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주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사회에 들어올 정도 되는 분들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견이 없겠어요? 서로 집단지성을 발휘하면……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대해서 지지했다’ ‘내란을 지지했다’ 이런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지요.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는 얘깁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박성준 위원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헌법적 가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런데 교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과하다 그래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보해 주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들 반대하시더니……

○조정훈 위원 그분들은 공무원이고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여기도 공공기관이지요.

○조정훈 위원 특수법인인데 어떻게 국가공무원입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그래서 거기는 그래도 괜찮다?

○조정훈 위원 완전 다르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너무 잣대가 다른 것 같아서.

○백승아 위원 동의가 안 됩니다. 외국은 공무원도 다 보장해 줍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박성준 위원님 말씀에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박성준 위원님의 말은 49페이지 2항에는 완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장 및 이사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맞지요. 그리고 임명을 함에 있어서 그 살아온 길이 본인이 갖고 있는 학문적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와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운영할 사람이면 부족한 것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51페이지는 해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열거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해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해임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게 법 효익에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4번의 경우인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 및 사업 수행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실은 거의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엄에 찬성했다, 부적합하지요. 이 경우에 다 포함되는데.

아까 서지영 위원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이나 교수 할 정도면 최고의 엘리트 지성인인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심히 훼손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특정 논문을 썼을 때 특정 강의를 할 때 보수적으로 또는 진보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정치적 중립성을 심히 훼손한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신의 학문적 양심을 가지고 이 정도면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학문적 입장을 강의하거나 논문을 썼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도 되는 원장이나 임원과 교수들에게 주어져야 될 학문적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경계선은 어디냐? 당연히 법률이고 당연히 헌법적 가치지요. 이걸 넘어서면 그건 스톱이지요. 해고지요.

그래서 ‘헌법적 가치와 법률을 위반한’ 이것까지는 저도 동의가 되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심히 훼손했다’. 국가공무원도 아닌데, 국가공무원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공기관의 관계자로서 이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아까 조정훈 위원님 말씀 중에 계엄에 동참한 사람들은 안 해야 되겠지요. 안 할 수 있다고 했던가, 안 해야 된다고 그랬던가, 방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법에 의하면 계엄에 동참한 자들에 대한 해임의 조항이 있습니까? 현행법, 개정 전.

○조정훈 위원 지금 법.

○소위원장 고민정 지금 현재 법.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해임을 규정한 현재 정관을 보게 되면 옆에 전부개정안……

○소위원장 고민정 몇 페이지에 있나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지금 51페이지에 전부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유사한데요. 1호가 법령 및…… 여기는 정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호에는 ‘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한 때’, 다시 말씀드리어서 법령하고 원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해임할 수 있도록 1호가 되어 있고요.

2호는 여기 있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연구원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한 경우’. 여기는 ‘중대한’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 정관에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한 경우로만 한정을 해 뒀고요.

3호에 보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연구원의 목적 사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3호가 결국 다 잡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다만 기타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유들이 연구원 목적 사업 수행에 부적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목적 사업을 한국학에 관련된 진흥·관리·감독 이런 부분들로 한정하게 된다면 방금 말씀 주신 위원님의 헌법가치 부분들이 큰 틀에서는 포괄될 수 있어도 명시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것은 1호 법령 및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그냥 바로 걸리지 않습니까? 법령에 헌법이 포함되지 않나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이 법령은 당연히 헌법 하위법령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다 있겠지요. 왜냐하면 현재 제시는 이사장 혹은 현재 제시는 원장 혹은 이사진들 중에 이 해임 조항에, 즉 정치적 중립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 혹은 헌법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법안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위인설법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정 사람을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겠다는 뜻이잖아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런 사례가 없는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거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했는데 아니라고 판단되면 아닌 것이지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훈 위원** 그 논란은 또 다른 논란인데 다시 이걸로 돌아와서, 3호 정치적 중립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이것을 들어내자는 의견들이신 거지요?

○**조정훈 위원** 큰 틀에서는 이 특수법인 전환이 동의가 되니까, 이것 없어도 정치적 중립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는 아까 박성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단체 임원 될 정도면 다 아니까.

그리고 4호도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의 설립 목적, 사업 수행에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솔직히 여기에 다 걸리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그런데 이런 정도의 임원이 되시는 분들 가운데 부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조정훈 위원** 그것은 주관적 판단이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야당은 전부 다 반대하시고 여당에서도 반대의견들이 좀 계셔서 이것은 빼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백승아 위원** 저는 보완책을 여쭙본 거지 반대는 아닙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좀 더 검토해 봐요, 일단은. 설마 이것을 오늘 의결하실 것은 아닐 테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쭉 넘어가시면……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고민정** 말씀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저는 이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 누군가들을 징계하기 위한 의도로 더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여당에서도 이 부분을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소위원장 고민정** 그런 의견들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본 법안에 대한 이견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이견들은 없어 보이구요.

그러면 59페이지의 부칙, 아까 조정훈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전환위원회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임원에 대한 임기 만료 부분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법이 개정될 경우에 교육부……

○**조정훈 위원** 내용에 대해서……

○**소위원장 고민정** 잠깐만요,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법 개정이 될 경우에 어쨌든 이사회와 임원들을 구성해서 가기는 해야 될 텐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인수위 같은 곳을 만드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맞습니까?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예, 맞습니다.

유사 사례로 한국연구재단법에 의거해서, 한국연구재단이 출범할 때 그 법을 참고해서 저희가 전환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을 제안드렸는데 실제로 법인이 최초에 설립될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의 임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관이 설립될 때는 이런 준비위원회를 부칙 조항에 쥐 가지고 설립 준비를 추진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 법인이 법률상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 사례이고 그것이 저희는 설립에 준할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드린 것처럼 준비위원회를 거쳐서 면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정의견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부칙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준비위원회는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설명 부분에서 준비위원회 전환위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앞에서 조정훈 간사도 말씀하셨지만 임직원의 임기 관련 경과규정 입법 사례 이걸 좀 보시면 한국부동산원법 부칙의 경우는 2020년 개정했습니다. 이때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임원의 임기는 한국감정원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부칙에 넣어서 지금 현재 남은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했구요. 또 2024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경우에도 역시 ‘중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학 원장에 대한 평가, 저도 평가는 있습니다. 조정훈 간사님은 좀 더 불만적인 평가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평가와 달리 일반적인 사례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법인이 전환되거나 이럴 때 임직원의 임기는 보장하는 것으로 해 왔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궁금합니다.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임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 임원들을 승계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런데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라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1999년에 출범했을 때 그 사례 보게 되면 임원 승계 부분들을 하지 않은 입법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환 부분들에 대한 입법의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임원 부분들이 비상임이시고 계속 상주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런 부

분들에 대한 개정안의 취지를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소위에서 논의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대로 따를 텐데 다만 개정안 부분들에 임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승계한다 안 한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례를 보게 되면 승계한다라는 표현이 없게 되면 승계하지 않도록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십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임원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그대로 승계한 케이스도 있고 무효로 하고 새롭게 한 입법 사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결국에는 현재 임원의 임기를 어떻게 할 건지는 판단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번째 법안심사소위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한 번 더 소위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동의하고요.

기록을 위해서, 나중에 추후 한 번 더 논의할 때 연구해 보시라고, 56페이지의 내용 조항인데요. 신설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56페이지 19조 2항인데 ‘연구원은 고전 등 연구에 필요한 희귀자료를 갖고 있는 자에게 열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요청에 따라야 된다’ 의무조항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소장하고 있는 자가 공공기관이면 말이 되는데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것 열람 거부할 수 있지 않아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 부분 전문위원님이 설명 주신다고 하네요.

○조정훈 위원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남의 개인 자산인데?

○소위원장 고민정 일단 설명을 좀 들어 보실까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이 부분은 현행법에도 있던 내용이었는데 개정안에서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현행법과 동일하게 정리를 한 부분이고……

○조정훈 위원 그런데 현행법이라고 해도 헌법적 개인의 재산이라고 간주한다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연구를 위해서 개인 소장자료에 대해서 열람·복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얼마 전에 훈민정음 보여 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그런데 뒤의 항을 보시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것을 연구 목적 외로는 못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균형이 맞다고 봐서 지금 정리되어 있는 내용……

○조정훈 위원 정당한 뭐라고 그러셨지요? 못 들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고 이 자료에 대해서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정당한 대가를 천문학적으로 부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 그러면 정당하지 않겠지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오늘 이것은 통과 안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세요. 저는 이것 어차피……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 이것은 기존에 있는 내용이어서……

○박성준 위원 아니, 고전 같은 경우 집에 갖고 안 내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정훈 위원 있지요.

○박성준 위원 그래서 그런 조항을 넣은 거겠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렇지요. 연구를 해야 하니까 그런 겁니다.

○박성준 위원 아주 소중한 고전이라고 아예 자기만 소장하고 있어서 그렇지요.

○조정훈 위원 그래도 설득해야지 이걸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위원님, 현 조항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말이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자들이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는 계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안 주신 부분들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사례 부분들하고 대가 지불 부분들이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헌법적 가치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법 조항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지영 위원 저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제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57페이지에 20조 3항을 수정의견으로 내신 데 보면 ‘연구원에 대해서 업무·회계·재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개인의 물품을 검사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압수수색 영장 나와야지 검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개인의 물품을? 그 물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지요? 원래 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까? 제가 이것 조금 궁금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그러니까 개인이라기보다는 연구원의 서류 및 물품이어서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서류이고 이 부분은 다른 입법례에서도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렇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그러니까 개인 것이 아니라 연구원이 업무상 가지고 있는 서류와 물품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아마 물품이 들어간 이유가 서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들이 있을 수 있어서 물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민전 위원 감사와 검사의 차이는 뭔가요?

○소위원장 고민정 감사와 검사의 차이를 여쭙습니다. 교육부, 감사로 되어 있었는데 감사로 바꾸신 거잖아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이 전부개정안 3항에 있는 부분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그 자체는 특수법인으로 전환이 되면 당연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를 받는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항을 저희가 수정의견의 3항으로 대치하게 된 것은 동북아역사재단법에도 재단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물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동북아역사재단 쪽에도 있는 똑같은 내용이다?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예, 맞습니다. 이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연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지칭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기관입니다.

○**조정훈 위원** 기관?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조정훈 위원**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부칙 그 앞의 부분까지는 열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교육부 인지해 주시고.

사실 상반기 소위가 또 열리기가 어렵겠다 싶었는데 한 번 더 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기자고 하시니. 그래서 좀 더 고민해 오시고 여야 위원님들 간에 될 수 있으면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16항 및 17항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16·17항 자료 1페이지, 주요내용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4개 정도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은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 내용, 연구윤리와 관련된 실태조사 및 공개에 관한 규정, 그리고 학술지원사업 성과에 대해서 소유·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그리고 대학 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지영 의원안에 있는 내용으로 현행법에서는 학술단체활동을 촉진·장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학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상을 넓히려는 취지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백승아 의원과 서지영 의원님 각각 발의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개정안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시행령과 지침에 근거해서 연구윤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서 실태조사의 항목들이 법정화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의 개정안들이 실태조사 항목과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위임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지영 의원안과 백승아 의원안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백승아 의원안은 서지영 의원안에 더해서 자체연구윤리규정 시행현황을 추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백승아 의원안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윤리지침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정사항은 8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학술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학술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현

행법에서는 일반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개정안에서는 박스의 내용을 보시면 대학등이 학술성과의 권리를 승계해서 소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2항에서는 학술성과 유형에 따라서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미리 공지하는 경우 또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공공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규정을 보완해서 구체화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균형 취지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는 교육부에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실적으로 이러한 연구성과 소유에 관한 사항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수정의견은 교육부에서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네 번째 개정사항으로 14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등의 조치와 관련해서 원활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학술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제재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대학등이 행한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인데 현재 대학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원칙적으로는 대학이 이러한 연구윤리에 관한 책임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을 보시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즉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에 한해서 조사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어서 이런 현행법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5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연구재단이나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교육부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체적으로 개정 취지에 동의하고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14쪽,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시행 및 제재조치 관련해서 저희가 학문의 자율성 그다음에 대학의 자율성을 조화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정부 소속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부정행위를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독립된 제3의 기구를 신설해서 하는 것이 조사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현재 강경숙 의원님하고 김영호 의원님 발의 개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지금 14페이지에 있는 4번에 관련된 제재조치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강경숙·김영호 의원님 법안이 있어서 그것과 붙여서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번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정리하면 그것까지만 통과시킬 수는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백승아 의원님 안이 4번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백승아 의원님이 실태조사만 반영을 하고 폐기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실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김영호 의원님 안 때문에 계속 계류하는 걸 희망하실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백승아 위원님 의견을 주셔야겠네요.

○백승아 위원 일단 이 3번까지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4번에 대해서 제가 교육부에 질의는 짧게 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예.

○백승아 위원 일단 대학의 자율성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법안이 자율성이라는 헌법적인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고의로 지연하고 회피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안 전망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일차적 책임은 여전히 대학에 있지요. 하지만 예외적인 또 보충적인 수단으로 교육부에서 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제 법안에도. 그러니까 이 정도면 대학 자율성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연구윤리를 검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사실 이것을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갑자기 폐기돼서 제가 현안질의도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대학이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에도 대학의 자율성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하는 경우에 교육부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지금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말씀하신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가진 대학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교육부는 행정을 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학문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가 2021년인가 그때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을 논의했었습니다만 최근에 김영호 의원님 개정안도 발의되고 해서 다시 심도 있게 많은 논의를 해 봤는데, 저희가 단순히 어떤 기관을 지정해서 하기보다는 정치적·학문적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독립된 제3의 기구로 설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 수단은 없지만 강경숙·김영호 의원안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지금 네 번째 조항에 들어 있는 건 백승아 의원님 법안에만 있는 내용이어서 백승아 위원님께서 양해를 주시면 오늘은 서지영 의원님 안을 수정해서 저희가 의결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백승아 의원님 법안과 강경숙·김영호 의원님 법안을 같이 병합해서 다음번 소위에서 가장 먼저 올려 처리하는 것……

○백승아 위원 그냥 네 번째 항을 제가 폐기하고 오늘 제 법안도 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소위원장 고민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백승아 위원 예.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잠깐만요. 하나 정리할 게 있어요.

5페이지,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는데 서지영 의원님은 대통령령이고 백승아 의원님은 연구윤리지침인데 교육부의 의견은 뭔가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송근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정책관 송근현입니다.

서지영 의원님 안과 백승아 의원님 안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두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4쪽 보시게 되면 백승아 의원님 안에는 ‘자체연구윤리규정 시행현황 등’ 서지영 의원님 안보다 하나를 더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받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태조사 부분들을 현재 지침에서 법률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다 보면, 실제로 저희가 시행할 때 유연 내지는 탄력적인 부분들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보다는 연구윤리지침으로 정하는 게 행정부 입장에서는 좀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수정의견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정리됐나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9페이지에……

○소위원장 고민정 9페이지, 뭐지요? 개정안에 공감하시고 이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간단한 내용인데 학술성과 위탁 관리 관련해서 제5항 2호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부분으로 교육부에서 수정의견을 낸 부분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예, 거기에 다 동의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0항까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자료 3페이지입니다.

3건의 법률안은 방과후과정의 법적 정의와 운영 체계 등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과후과정 강사의 결격사유와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 학교의 장의 방과후 강사 검증 업무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5페이지, 방과후과정 법적근거 마련과 관련해서 보면 현재 방과후과정은 법에 명

문의 근거 규정은 없고 흩어진 여러 조항들이 하위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개정안은 여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두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정의 방식이라든가 방과후과정의 계획수립 체계, 수요조사 유무 등에서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 김문수 의원안에서는 돌봄활동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문정복 의원안에서는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문정복 의원안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방과후과정의 기준과 내용과 관련해서 두 개정안이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정복 의원안은 교육부장관이 방과후과정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고 김문수 의원안은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문정복 의원안에 따라 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4페이지 계획수립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문정복 의원안은 교육부장관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이 이에 따라 지역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별 실행계획을 포함해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방과후과정의 수요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시행해서 교육부는 이를 취합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 절차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그래서 이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항목으로 19페이지 보시면, 방과후과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그 과정의 강사에 대해서도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법에 따로 규정이 돼 있지 않고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취업 제한이 된 경우는 해당 법률에 따라서 취업이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학교에서 방과후과정 위탁 공고 계획 등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들을 법에 직접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2페이지 첫 번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에 관해서 김문수 의원안은 강사 이외에 위촉직 봉사자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봉사자의 경우에는 보조인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교육부의 수정의견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방과후과정 강사 결격사유 관련해서 교육공무원법 10조의3 제1항 및 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김문수 의원안과 문정복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문정복 의원안에서는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도 본 법에 명시하고 있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자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여기서도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정복 의원안에 따라 정리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방과후 강사 검증 및 범죄경력 등 조회 관련해서 문정복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서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해서 강사가 되려는 자의 역량 등을 검증하

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를 돕기 위해 교육감에게 결격사유나 범죄 전력 확인, 성범죄 경력 확인 같은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김문수 의원안도 결격사유 관련해서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도 교육부는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정복 의원안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방과후과정 즉시배제의 경우에는 임용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그 즉시 계약 해지 등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의원안에서는 그 내용만 돼 있는데 지금 문정복 의원안의 경우에는 강사가 방과후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강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안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과 그 외에 부칙 관련해서는 내용에 대해서 확정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대체로 문정복 의원안을 중심으로 교육부가 정리를 하신 것 같네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에서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체적으로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방과후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는 학교장이 해야 된다는 것만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오늘 의도치 않게 제가 많이 질의를 하는데요. 일단 방과후학교가 도입된 지 벌써 십수 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관련 법이 없었다.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십 개의 학교가 반대의견을 냈고 수많은 교육청, 교원단체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의 필요성과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교육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원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좀 정리를 해 봤더니 일단 업무 부담, 정규 교육 과정의 운영에 영향 끼친다, 교직원 책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강사 역량 검증을 학교장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 또 결격사유 조회 업무를 교육감이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아동복지법 이런 법들을 근거로 해서 이미 학교장이 조회 요청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육감 지원이 효과가 있나 이런 의문이 좀 들고.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인데, 지금 교육부는 이 법이 학교와 교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학교장과 교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게 법제화가 되면 전후로 해서 학교장과 교원의 업무량 변화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설득하거나 소통하거나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교육부가 이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근거 마련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지요. 십수 년간 운영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런 걸 느끼는데, 법이 현장을 이끌어 가야지 지금 현장이 법을 두려워하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진짜 현장에 미칠 부담은 미미하다 제한적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서서 만약에 현장의 우려가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사실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의원님 법안에 돌봄이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정복 의원안은 돌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도교육청이나 관련 단체에서 여기에 적혀 있는 반대의견을 낸 것은 돌봄 부분이 들어간 것에 대한 반대의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게 가장 큰 부분이었던 게 맞나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업무 부담에 대한 부분도 많은 걸로, 저는 소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래서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면, 일단 돌봄에 대한 거는 서로 이견이 좀 해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교육부에서 문정복 안으로 가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백승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이 더 많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니 지금 시간상 저희가 이것을 완료까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법으로 인해서 교사들에게 얼마만큼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가 그리고 이 법이 없으면 학생들이 방과후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 두 가지를 준비를 해서 다음 법안소위 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각 의원실에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래서 오늘은 이 법안까지 심의하고 다음번에 이거는 추가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가시면 안 됩니다.

의사일정 1항·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법안소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저한테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냥 가 버리시면 의결정족수나 이런 걸 계산해야 되는데, 조금 너무 무책임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그 사실을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교육부 관계자, 수석전문위원, 보좌진,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고민정 김문수 김민전 김준혁 박성준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조정훈

○출장 위원(1인)

강경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차관 최은옥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대학정책관 송근현

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학교정책관 김영진

학교지원관 유지완